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3(제28조의6부터 제28조의12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3 첨단전략산업기금

제28조의6(첨단전략산업기업의 업종) 법 제2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 속하는 업종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기업이 속하는 업종

제28조의7(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 ① 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1.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설비를 구축하는 기업
2.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설비 구축 또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

여 출자, 대출, 보증, 사채의 인수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기업

3. 첨단전략산업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등을 구매하는 거래상대방

② 법 제29조의9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제28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 법 제2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방식,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와 이 영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금융채권”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으로 보고, 제12조 중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금융채권”은 “법 제2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으로, 제24조 중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는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업무”로 본다.

제28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 비용 부담) 법 제29조의9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비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28조의10(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① 법 제29조의9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등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3.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

4. 합병, 분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 해산, 정관의 변경 등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하는 경우

5. 한국산업은행 또는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체결하는 약정에서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등)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는 자금지원을 위한 대상 선정, 사전 검토 및 심의 업무 중 일부를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에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의12(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 회장이 한국산업은행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는 운영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및 잔여재산 처리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청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금 운용 기간 종료일 당시 현존하는 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의무의 내용, 잔여재산의 목록 및 재무상태표

2. 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의무의 국가 승계 시기, 절차 및 방법

3. 기금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시기, 절차 및 방법

② 한국산업은행은 청산계획서에 따라 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국가에 승계하고 그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은 제2항에 따른 조치 후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제3장의3 첨단전략산업기금</u> <u>제28조의6(첨단전략산업기업의</u> <u>업종) 법 제29조의7제2항제3호</u> <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u> <u>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u> <u>말한다.</u>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콘텐츠산 업 특수분류에 속하는 업종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 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 물을 생산하는 기업이 속하 는 업종 <u>제28조의7(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u> <u>의 범위) ① 법 제29조의7제2</u> <u>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u> <u>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u> 1. <u>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운</u> <u>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u> <u>거나 설비를 구축하는 기업</u> 2. <u>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설</u> <u>비 구축 또는 기술 개발을</u>

<신 설>

지원하기 위하여 출자, 대출, 보증, 사채의 인수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기업

3. 첨단전략산업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등을 구매하는 거래 상대방

② 법 제29조의9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제28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 법 제2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방식,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와 이 영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금융채권”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으로 보고, 제12조 중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

<신 설>

<신 설>

업금융채권”은 “법 제29조의8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으로, 제24조 중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는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업무”로 본다.

제28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을 위한 출연) 법 제29조의9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비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28조의10(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① 법 제29조의9 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등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3.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

4. 합병, 분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 해산, 정관의 변경 등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하는 경우

5. 한국산업은행 또는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체결하는 약정에서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의결권이 행사될 수 있

<신 설>

<신 설>

도록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심의회가 첨단전략산업
기업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
권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28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등) 첨단전략산업기
금운용심의회는 자금지원을 위
한 대상 선정, 사전 검토 및
심의 업무 중 일부를 첨단전략
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
행에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의12(첨단전략산업기금운
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 회장이 한국산업은행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8조제2
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로 본다.